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9월 11일

나. 제 출 자 : 구미시장

다. 회부일자 : 2019년 9월 11일

라. 상정일자 : 2019년 6월 13일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2019년 9월 20일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도시환경국장 문 경 원

나. 제안이유

-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체계를
격일수거에서 매일수거로 개선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보다 안정적인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규모)를 완화하여 소상공인들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부담을 경감시키고,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배출일 변경 (안 별표2)
 - (현행) 격일 → (개정) 매일(토요일, 공휴일 전날 제외)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범위(규모) 완화 (안 제2조제3호)
 - (현행)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 250제곱미터 이상
 - (개정)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 상위법령 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5조제2호, 제19조)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중 우

- 본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체계를 격일수거에서 매일수거로 개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를 완화하는 사항을 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음식물류 폐기물을 매일 수거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 위탁 재활용해야하는 음식점의 범위를 완화하여 소규모음식점의 처리 부담을 경감시켜 비용이 저렴한 부적격 업체 등에 위탁하여 부적절하게 재활용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부결)